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2%) <3년특례>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년특례>
- 북한이탈주민



KAU 한국항공대학교

목 차

1. 전형일정	1
2. 모집단위 및 인원	4
3. 지원자격	5
4. 지원자격 심사기준	6
5. 지원방법	8
6. 전형방법	9
7. 제출서류	10
8. 신체검사	12
9. 유의사항	13
10. 전형료	15
11.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안내	16
12. 등록안내	18
13. 입학전형 문의	19

- 〈 별첨 양식 〉
1. 학력조회동의서
 2. 제3국 수학사유서



1 전 형 일 정

가. 3월 입학

○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2%) <3년 특례>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4. 7. 8.(월) 09:00 ~ 7. 12.(금) 18: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hak.kau.ac.kr) 또는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사진(3cmx4cm)을 스캔하여 준비
필기고사	2024. 7. 18.(목) 10:30 ~ 11:45	■ 시험장소 등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필수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4. 7. 26.(금)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서류 접수	2024. 7. 26.(금) 09:00 ~ 8. 9.(금) 16:00	■ 스캔 후 원서접수 시스템 온라인 업로드 (ZIP 파일 20MB 이내) ■ 최종합격자는 입학전까지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 제출 서류와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최종합격자 발표	2024. 9. 11.(수)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 합격증,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금고지서 등 안내
온라인 문서등록	2024. 12. 16.(월) ~ 12. 18.(수) 14: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합격자 문서등록' 인터넷 신청 ■ 문서등록은 별도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임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4. 12. 19.(목) ~ 12. 26.(목) 18:00	■ 미등록 충원 합격자는 유선으로 개별통지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4. 12. 27.(금) 12:00	
등록금 납부	2025. 1. 6.(월) ~ 1. 10.(금) 16:00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 전교육과정재외이수자[1차 / 2차] <12년 특례> / 북한이탈주민 [1차만 모집]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1차 모집	2차 모집	
입학원서 접수	2024. 7. 8.(월) 09:00 ~ 7. 12.(금) 18:00	2024. 9. 9.(월) 09:00 ~ 9. 13.(금) 18: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hak.kau.ac.kr) 또는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사진(3cmx4cm)을 스캔하여 준비
서류 제출	2024. 7. 8.(월) 09:00 ~ 7. 19.(금) 16:00	2024. 9. 9.(월) 09:00 ~ 9. 20.(금) 18:00	■ 스캔 후 원서접수 시스템 온라인 업로드 (ZIP 파일 20MB 이내) ■ 최종합격자는 입학전까지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 제출 서류와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최종합격자 발표	2024. 9. 11.(수)	2024. 11. 8.(금)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 합격증,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금고지서 등 안내
온 라 인 문서등록	2024. 12. 16.(월) ~ 12. 18.(수) 14: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합격자 문서등록' 인터넷 신청 ■ 문서등록은 별도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임
등록금 납 부	2025. 1. 6.(월) ~ 1. 10.(금) 16:00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 북한이탈주민은 “1차 모집”기간에만 선발함

나. 9월 입학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년 특례>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1차 모집	2차 모집	
입학원서 접수	2025. 3. 10.(월) 09:00 ~ 3. 21.(금) 18:00	2025. 6. 2.(월) 09:00 ~ 6. 13.(금) 18: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hak.kau.ac.kr) 또는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사진(3cmx4cm)을 스캔하여 준비
서류 제출	2025. 3. 10.(월) 09:00 ~ 3. 28.(금) 18:00	2025. 6. 2.(월) 09:00 ~ 6. 20.(금) 18:00	■ 스캔 후 원서접수 시스템 온라인 업로드 (ZIP 파일 20MB 이내) ■ 최종합격자는 입학전까지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 제출 서류와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최종합격자 발표	2025. 5. 2.(금)	2025. 7. 25.(금)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 합격증,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금고지서 등 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25. 7. 28.(월) ~ 8. 1.(금)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2 모집단위 및 인원

구 분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명)
	모집단위명	모집단위내 전공 (세부전공)	입학 정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재외국민과외국인 (정원외2%) <3년특례>	공과대학 ^{주1)}	우주공학 항공공학 기계공학 우주항공신소재 반도체 신소재 항공MRO	198	19	16
	AI융합대학 ^{주1)}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시스템반도체 전자 및 항공전자 AI융합 ICT	208	20	
	스마트드론공학과		50	5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40	4	
	항공·경영대학 ^{주1)}	항공교통 물류 경영 항공경영	142	14	
	항공운항학과		40	4	
	자유전공학부 ^{주1)}		149	14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년특례>	전체		무관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	전체 단, 항공운항학과 제외		무관		제한없음

※ 2025학년도 입학생은 복수전공(제1전공 및 제2전공)을 의무 이수해야 하며, 이수 기준 및 선발 방법은 학칙에 따릅니다.

※ 2025학년도 입학생은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선택합니다. 단, 학과모집단위(스마트드론공학과, AI 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항공운항학과) 입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제1전공이 부여되고, 2학년 진급 시 제2전공을 선택합니다.

<모집단위별 전공 선택 가능 범위>

구분		제1전공	제2전공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 모든 전공 선택 가능 (단, 스마트드론공학과, AI자율주행시스템 공학과, 항공운항학과 선택 불가)	- 모든 전공 선택 가능 (단, 항공운항학과 선발인원은 수용 가능 범위 내 별도로 정함)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생 (공과대학, AI융합대학, 항공·경영대학)		- 본인의 모집단위 단과대학 내 모든 전공 선택 가능 (단, 스마트드론공학과, AI자율주행시스템 공학과, 항공운항학과 선택 불가)	- 모든 전공 선택 가능 (단, 항공운항학과 제외)
학과	스마트드론공학과	스마트드론공학과	
모집단위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입학생	항공운항학과	항공운항학과	- 모든 전공 선택 가능

※ 항공운항학과는 학과특성상 신체검사 결과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

※ 수시모집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3

지원자격

가. 공 통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나.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2%) <3년 특례>

- 지원자격

- ①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 ② 부모와 함께 해외근무자 근무지 소재 국가에 체류하며,
- ③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전입구분 자격요소		학생이 학기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학생이 학기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학기 중 편입)
재학기간 1개 학년 기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학년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 충족으로 간주)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날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체류일수 요건	학생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 1개년 기간의 3/4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날까지 각각 1개년마다 3/4
	부모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 1개년 기간의 2/3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날까지 각각 1개년마다 2/3

※ 체류일자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다.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년 특례> /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자격요건	학력요건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북한이탈주민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외국인 학생은 본교 '순수외국인(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전형'에 지원하여야 함

4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공 통

○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교육과정 이수 기준

- 1)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초·중·고)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한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원 자격 만족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월 학제	○	○	○	○	○	○	○	○	○	○	○	○	○	○	○	○	○	○	○	○					
9월 학제																									

- 2)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일반(전·편입학 시 일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일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기간은 예외적으로 2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 3)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학제 차이로 인해 발생한 중복학기 1개 학기로 누락된 학기를 대체할 수 있음(반복인정 가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원 자격 만족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월 학제	○	○	○	○							○	○	○	○			○								
9월 학제					○	○	○	○	○	○	○	○	○	○	○	○	○	○	○	○	○	○	○	○	

- 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중복 이수한 경우,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재학학기로 인정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원 자격 미달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월 학제	○	○	○	○	○						○	○	○	○				○	○	○					
9월 학제					○	○	○	○	○	○	○	○	○	○	○	○	○	○	○	○					

- 중복학기 등 지원 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4)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국내 검정고시를 인정한다.

○ 외국학교 인정 기준자격

-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 되는 학교만을 인정한다.
- 2)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단, 정규과정과 어학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해당학기 정규과정 성적을 취득한 학기는 인정함)은 외국학교 교육과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 재학학기 인정 기준

- 1) 졸업 예정 기간은 3월 입학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9월 입학자의 경우 2025년 8월31일까지 인정한다.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 대학교 입학 후 고교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2)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기타

- 1) 조기졸업, 일반, 외국의 학제 차이 및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2%) <3년 특례>

-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2%) 지원자의 외국학교는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국가 내에 위치한 학교만 인정한다. 단, 해외근무자 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3국 수학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교 소정 양식의 제3국 수학사유서 제출 필요)
- 해외학교 재학 중에 해외근무자의 타 국가 인사발령(대한민국 제외) 등으로 인한 제3국 수학은 최대 6개월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 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기간(통산 3년(1,095일) 이상) 내 학생의 해외재학기간(2학기제의 경우 6학기 이상)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직기간과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인정여부 등은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다.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년 특례>

-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로 인정한다.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로 인정한다.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한다.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년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5

지원방법

가. 지원은 1개 학부(과)만 할 수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은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

다. 국적 관련 개정 국적법에 의하여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으므로, 복수 국적자는 입학원서 접수 시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에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타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 처리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될 수 있음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됨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마.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12년특례>'의 경우, 3월입학 모집 전형에 합격한 자는 동일학년도(2025학년도) 9월입학 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6

전형방법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2%) <3년 특례>

- 전형요소 : 필기고사 100% (총점 100점)

모집단위	시험과목	총점
전체 모집단위	수 학 (시험범위 : 수학, 수학 I·II)	100점

- 선발방법

1) 서류제출대상자 선발

가. 필기고사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발한다.

모집단위	서류제출 대상 인원
전체 모집단위	모집인원의 4배수

나.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는 지원자격 충족여부만 판정한다.

2) 최종합격자 선발사정

가. 최종합격자 선발사정은 모집단위 구분 없이 지원자의 필기고사 석차 순에 따라 사정하며, 모집단위별 최대모집 가능인원은 입학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버림)로 한다.

나.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외국학교 총 재학 기간이 많은 자(재학증명서의 재학 기간 기준)
- ② 위 항목까지 동점인 경우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나.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년 특례> / 북한이탈주민

- 전형요소 : 서류평가 100% (총점 100점)

- 선발방법

- 제출한 서류를 본교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만으로 합격자 선발
-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정성평가로 반영

7

제출서류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2%) <3년 특례>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① 입학원서 1부	- 인터넷(진학어플라이) 접수 후 출력하여 날인
	② 지원자 종합기록표 1부	- 교육과정 이수상황 및 재학학교 정보, 이수 관련 특이사항 기재 - 원서접수 시 웹사이트상에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각 1부	-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는 생활기록부로 갈음함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학교 발급문서에는 발급부서 영문주소, 전화·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예정증명서의 제출자는 최종합격 후 입학전까지 졸업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함
	⑥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추가서류 제출 필요(지원자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임장(부·모·학생) 각 1부	- 고교졸업일자 이후 최종 출입국일자 조회 목적 - 원서접수 시 웹사이트상에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⑨ 여권 사본(부·모·학생) 각 1부	
	⑩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학생) 각 1부	-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 -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인해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해외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제출 가능한 것 제출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체류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체류국가 내 체류자격이 명시된 사증(비자)란 ○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체류국 임대차 계약서 ○ 체류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 체류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주증, 영주권 등
	⑪ 학력조회동의서 1부	- 해외에서 이수한 최종학력에 대한 학력조회동의서 작성 - 원서접수 시 웹사이트상에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⑫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1부	- 재학증명서 등을 통해 학기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기기간 확인용
	⑬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부·모)	- 원서접수 시 웹사이트상에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자원유형별 제출서류	⑭ 해외근무자 근무/사업/영업증명서 (※ 각 증명서는 자격대상기간에 대해 실제 해외근무와 재직회사의 성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해외파견재직자 - 해외근무자(부모 중 1인)의 재직증명서 1부
		현지취업자 - 해외근무자(부모 중 1인)의 재직증명서 1부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1부 ※ 법인세 납부이력 제출 불가 시, 개인소득세 납입 증명서로 대체 가능
		현지자영업자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서류	⑮ 제3국 수학사유서 1부	- 해외근무자 근무국이 아닌 외국에서 자녀가 재학한 경우 제출 (미제출 시 해당 기간은 재외국민 자격기간에서 제외) - 원서접수 시 웹사이트상에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⑯ 항공신체검사 1종 신체검사 증명서 및 신청서 각 1부	-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한해 제출.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증명서가 유효하여야 함

[최종등록 후 입학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원서접수시스템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
- 해외고 졸업예정자 : 최종학기 성적이 포함된 고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최종학기가 자격기간에 포함되는 자 : 자격기간 만족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해외근무자 근무/사업/영업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 최종 입국 후 일자가 표시된 최종 증명서
- ※ 입학 전까지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본의 내용이 시스템에 제출한 서류와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나.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년 특례>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① 입학원서 1부	- 인터넷(진학어플라이) 접수 후 출력하여 날인
	② 지원자 종합기록표 1부	- 교육과정 이수 상황 및 재학학교 정보, 이수 관련 특이사항 기재 - 원서접수 시 웹사이트상에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각 1부	- 재외한국학교는 생활기록부로 갈음함 - 외국학교 발급문서에는 발급부서 영문주소, 전화·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⑥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1부	
	⑦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1부	- 고교 졸업일자 이후 기준 최종 출입국일자 조회 목적 - 원서접수 시 웹사이트상에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⑧ 여권 사본(학생) 1부	
	⑨ 학력조회동의서 1부	- 해외에서 이수한 최종학력에 대한 학력조회동의서 작성 - 원서접수 시 웹사이트상에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해당자 제출서류	⑩ 항공신체검사 1종 신체검사 증명서 및 신청서 각 1부	-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한해 제출.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증명서가 유효하여야 함
	⑪ 기타 서류	학생별 상황에 따라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 (어학능력(TOEFL, TOEIC, HSK, JLPT 등) 입증서류, 교내 활동 일체(특기, 봉사, 수상, 자격증 등) 입증서류, 해외체류국가의 대입성적 및 관련 성적(ACT, AP, SAT 등), 학사일정표 등)

[최종등록 후 입학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원서접수시스템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
- 고교 졸업예정자 : 최종학기 성적이 포함된 고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입학 전까지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본의 내용이 시스템에 제출한 서류와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다. 북한이탈주민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① 입학원서 1부	- 인터넷(진학어플라이) 접수 후 출력하여 날인
	② 지원자 종합기록표 1부	- 원서접수 시 웹사이트상에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시·군·구청 또는 민원24
	④ 학력조회동의서 1부	- 해외에서 이수한 최종학력에 대한 학력조회동의서 작성 - 원서접수 시 웹사이트상에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해당자 제출서류	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시·군·구청 또는 민원24 ※ 서류제출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금 사전 감면 가능
	⑥ 학력확인서 1부	

8

신체검사 (항공운항학과 지원자만 해당)

구 분	전 형 방 법
신체검사 대상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항공운항학과 지원자 (북한이탈주민 제외)
신체검사 종류	항공신체검사 1종 신체검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9 항공신체검사기준’ 참조)
인정 검사기관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신체검사 실시 병원
실시방법	- 상기 인정 검사기관에서 개인별 자율실시(사전예약 필수) - 개별 예약 및 수검 후,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각 전형별 제출기한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검사예약 및 결과 수령까지 수 주 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제출처	원서접수 시스템의 전형료 납부 이후 전형별 제출서류와 함께 압축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검사결과가 “적합”인 항공신체검사 1종 신체검사 증명서 및 신청서 ☞ 검사결과 “적합”인 경우 신체검사 합격 ☞ <u>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인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u>

[최종등록 후 입학 전까지 신체검사결과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전까지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본의 내용이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9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원서접수시 전형료 납부 후 “접수완료” 상태에서 지원자가 압축파일(ZIP)로 직접 업로드 하여 제출하여야 함 (최대용량 20MB)
- 2) 최종합격 후 3월 입학자는 2025년 2월 28일(금)까지, 9월 입학자는 2024년 8월 29일(금)까지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 제출된 서류와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 됨
- 3)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기관이 명시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의 명시가 없을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국외 발급서류의 경우 국외에서의 재학/근무를 마감한 시점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 4)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 관련
 -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언어 불문)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공증)을 받아야 한다.
(주재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공증)이 없는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 중 외국어(영어 제외)로 발급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의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된 서류는 학교장 직인 이외의 영사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수학한 수험생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한 해외학교 발급 서류(재학·성적·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해 영사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이거나 가입국이지만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해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아포스티유 문의처 : 외교부 (02-2002-0251~2) 또는 영사콜센터(02-3210-0404)

구 분	내 용
영사확인 필수 문서	해외 발급 서류 (외국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도 받아야 함)
영사확인 불필요문서	해외 발급 서류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한 해외 초·중·고 졸업(예정)·재학·성적증명서 및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된 서류

- 5) 제출서류 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동일인 증명서(해당 국가의 법원 등에서 발급)를 첨부하여야 한다.
- 6) 외국학교에서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 7) 성적·재학·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재학기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재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8) 자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9) 해외에서 국내 초등학교로 편입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해외 재학증명과 성적증명을 대체한다.
- 10)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11)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다.

나. 수험생 유의사항

-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3년 특례 전형 수험생은 필기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인정 신분증의 종류]

- | | | |
|---|--|--------------------------------------|
| ☐ 주민등록증 | ☐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사진부착) | ☐ 여권(유효기간 이내) |
| ☐ 청소년증 |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부착) | ☐ 운전면허증 |
| ☐ 학생증(사진부착, 성명, 고교명이 명시된 경우 인정 가능) |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함

- 2)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3) 서류 제출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합격자 발표 일자에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는 선발 종료시점까지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의 오기 및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 만약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본 대학교 입학관리팀으로 변경 통지하여야 한다.
- 5) 상기 항목 외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 관리지침에 따르며, 입학 후 각종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10 전형료

가. 전형별 전형료

구 분	전 형 료	비 고
▪ 재외국민과외국인(정원외 2%) <3년 특례>	90,000원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함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년 특례>	45,000원	
▪ 북한이탈주민	45,000원	

나. 전형료의 반환

- 접수된 입학원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연번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전형료 반환 규모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4와 같이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통해 전형료(접수수료 제외 금액)를 환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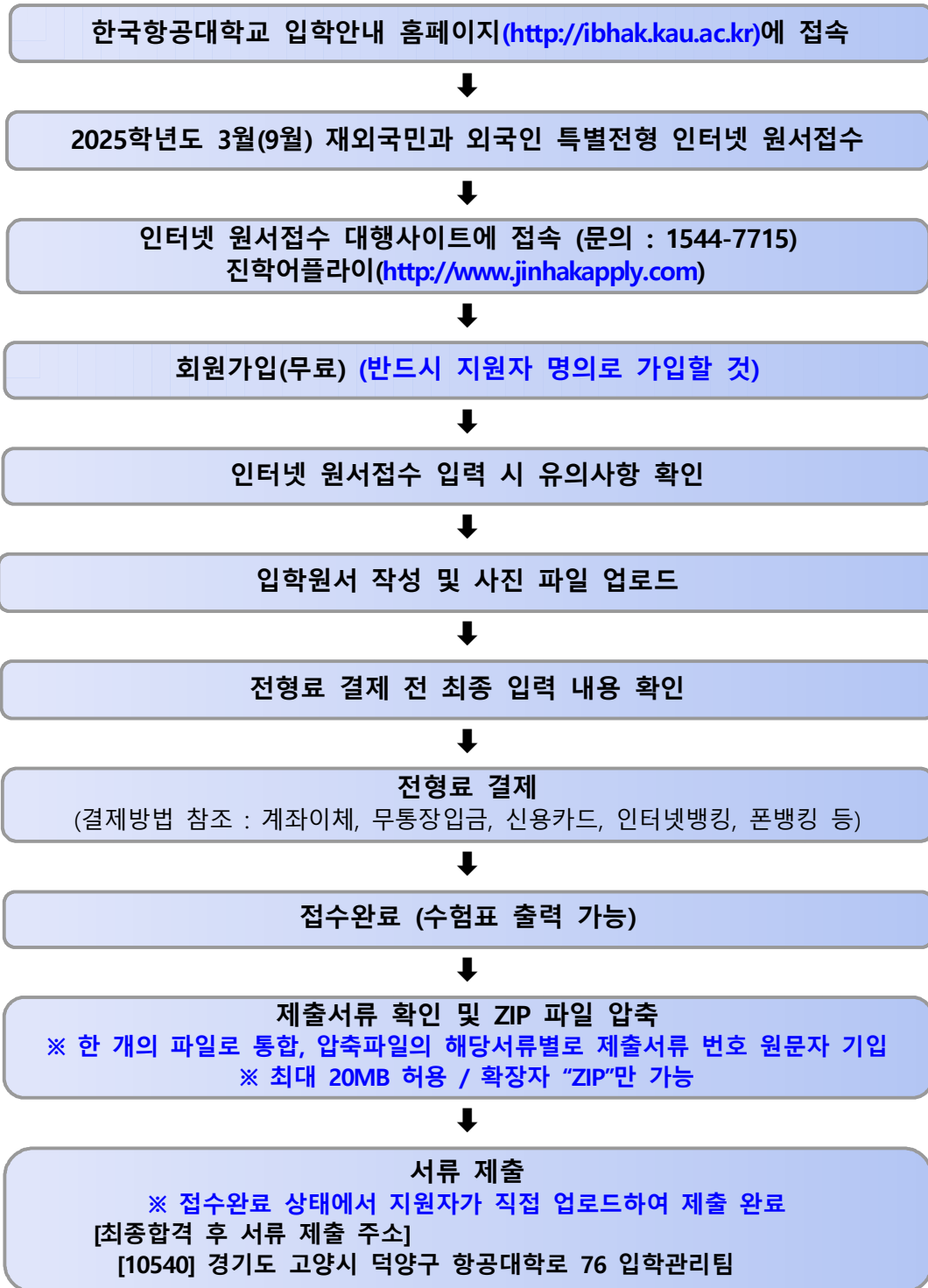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게 반환된다.
- 반환전형료 수령을 위해 원서접수 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법과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기타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로 는 지원자 본인이 부담한다.

11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안내

가.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절차



※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시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 웹사이트(www.jinhakapply.com)의 안내 사항을 참조할 것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원서의 모든 사항은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사항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 2)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는 원서 수정이 가능하나, 결제 및 접수완료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결제 전에 반드시 본인의 지원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3) 지원자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지원자의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 4)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입학원서 접수 시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5) 지원자 및 보호자 e-mail은 유선상으로 신속히 연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6) 전형료 결제 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고 수험표가 출력되어야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수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 7) 본인의 실수로 접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공개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 8) '10. 전형료'의 '나항'과 관련하여, 전형료 반환을 위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개인정보는 수험생의 동의하에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입학 및 학적 관련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대학 원서접수는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에서 위탁 대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험번호, 전형유형, 출신고교(검정고시), 졸업년도, 수험생 주소, 수험생 전화번호, 수험생 e-mail, 보호자 주소, 보호자 전화번호, 보호자 e-mail, 보호자 성명, 활용동의 여부, 학력조회 동의 여부, 전형료/등록금 반환 계좌번호 등

12 등록안내

가. 온라인 문서등록 [3월 입학자만 해당]

- 1) 등록기간 : 2024. 12. 16.(월) ~ 12. 18.(수) 16:00
- 2) 온라인 문서등록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합격자 문서등록'에서 인터넷 신청
 - 문서등록은 별도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임
(기존 등록 예치금 납부와 동일 효력)
- 3)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 문서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등록 포기'로 처리한다.

나. 등록금 납부

- 1) 등록(납부)기간
 - 3월 입학 : 2025. 1. 6.(월) ~ 1. 10.(금)
 - 9월 입학 : 2025. 7. 28.(월) ~ 8. 1.(금)
- 2) 등록금 액수 : 추후 공지
- 3) 등록장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 4) 등록금고지서 : 2025년 1월/7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출력
 - ※ 국가유공자 장학생은 보훈청에서 발행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반드시 학생지원팀
(02-300-0023)에 제출하고 장학혜택을 받은 후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함
- 5)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으로 인한 '등록 포기'로 처리한다.

다. 등록 유의사항

- 1)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등록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히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자는(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 반드시 1개교를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할 수 없다. 만약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이 확인될 경우 그 합격을 모두 취소한다.
- 3)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 4) 최종 전형일정이 종료된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입학년도의 말일까지 당해 입학을 무효로 한다.

13 입학전형 문의

- 대 표 전 화 : (02) 300 - 0114
- 입학관리팀 : (02) 300 - 0228, 0229, 0446 (입학전형 및 합격사항, 신체검사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 : (02) 300 - 0023, 0025 (장학금 문의)
- 재 무 팀 : (02) 300 - 0032 (등록금 관련 문의)
- e-mail : admission@kau.ac.kr
- F A X : (02) 3158 - 0037
- 주 소 : (105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학력조회동의서

(LETTER OF CONSENT)

학력조회 요청 학교 정보 Institution Information to request Release of Academic Information	
학력조회 담당부서 Office in Charge	
학력조회 담당자 성명 Name of Staff in Charge	
담당자 연락처/팩스번호 Phone/Fax No. of Staff in Charge	
담당자 E-mail E-mail of Staff in Charge	

지원자: _____ (확인)
Applicant _____ Signature

한국항공대학교

< 별첨 2 >

제3국 수학사유서

수험번호		성명	
지원 학부(과)			
전화번호 1		전화번호 2	

※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

지원자 수학국가		지원자 수학기간	
보호자 근무국가		보호자 근무기간	

※ 지원자 수학국가 및 보호자 근무국가가 복수일 경우에는 각각 기재

제3국 수학사유

위 내용에 허위 사실 기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보호자 : (인)

- 제출대상자 : 지원자의 수학국가가 해외근무자 근무국가와 상이할 경우 <모집요강 4.나 참조>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웹사이트 상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
- 제3국 수학사유서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이 필요하지 않음



한국항공대학교

KOREA AEROSPACE UNIVERSITY

- ☐ 입학처 입학관리팀
- ☐ Homepage : <http://ibhak.kau.ac.kr>
- ☐ e-mail : admission@kau.ac.kr
- ☐ Tel. 02-300-0228, 0229, 0446
- ☐ Fax. 02-3158-0037